[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 청 내 용 확 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